###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79 발의연월일: 2020. 10. 27.

발 의 자 : 윤준병 • 아수진비 • 양이원영

송옥주 · 안호영 · 진성준

이용빈 · 오영환 · 민형배

정필모 · 이탄희 · 김성환

황유하 · 이수진 · 이해식

김주영 · 김정호 의원

(17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배 노동자 등 14개 직종의 특고 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특고 노동자가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운영되면서 대부분의 특고 노동자들은 사업주의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로 사업주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산재 적용제외 신청을 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료에 대한 특고 노동자의 부담 또한 산재 적용제외 신청 사유 중 하나임.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특고 노동자의 산

재 적용제외 신청률은 79.7%에 달하고 있어 특고 노동자는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한편, 고용보험료의 경우 현행법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 득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특고 노동자의 산재 재해율은 1.9 5%로 일반 근로자 재해율 0.58%에 비해 3.4배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산재위험이 높은 저소득 특고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으로써 특고 노동자들을 산재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고용보험료"를 "보험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로 한다.

② 국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49조의3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용보험료"를 "보험료"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 <u>고용보험료</u> 의 지원) ①	제21조( <u>보험료</u> 의 지원) ① (현행	
(생 략)	과 같음)	
<u>&lt;신 설&gt;</u>	② 국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제125조에 따라 산재보험	
	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	
	사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49조	
	의3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산	
	재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	
	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21조의2(지원금의 환수) ① 국	제21조의2(지원금의 환수) ①	
가는 제21조에 따른 <u>고용보험</u>	<u>보험료</u>	
료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다만, 환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② ~ ④ (생 략)

 	-	
	•	

- 1. 2.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